경기지방고용노동청(공시송달)공고 제2026-248호

고용보험(실업급여) 부정수급 처분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

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등 반환명령 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11. 4.

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 

1. 건 명: 고용보험(실업급여) 부정수급 행정처분 결정 통지
2. 근 거: 고용보험법 제61조, 제6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, 제105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붙임-공시송달 명단 참조
4. 공고기간: 2026. 11. 4.~2026. 11. 18.
5. 기타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권동혁(031-230-765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정처분 결과 통지 공시송달 명단

(공고기간 : 2026. 11. 4.~2026. 11. 18.)

연번	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불능사유
				명칭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
1	조○희	1987.02.23.	경기 수원시 (이하 생략)	고용보험(실업급여) 부정수급 처분 (반환명령 처분)	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음	○ 총 반환명령액: 구직급여 1,027,060원 반환	폐문부재